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88
------	------

2017. 8. 30.  
기획경제위원회

##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8. 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현장 역량 강화를 통해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7,603명에서 17,771명으로 168명 증원하고자 함.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민생안전과 복지·소방 등 시민생활 지원과 서울기록원과 공예박물관 건립·운영에 따른 인력보강 등을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17,603명에서 17,771명으로 168명 순증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소방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직 30명,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생사법경찰관 10명, 서울식물원 관리인력 22명, 병동보호사를 비롯해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력 49명, 서울기록원 건립 및 운영인력과 서울공예박물관·돈의문전 시관 개관 등에 필요한 인력 38명,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인력과 봉제·디자인 분야 필요인력 19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총 정원 17,603명 → 17,771명〉

구분	총계	2.3급	3급	4급	5급 이하	연구관	연구사	소방정	소방령 이하	교원
현행	17,603	23	17	227	9,401	54	288	29	6,886	498
개정후	17,771	23	17	231	9,519	57	301	29	6,916	498
증감	+168	-	-	+4	+118	+3	+13	-	+30	-

구 분	총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합의제 행정기관
개정 전	17,603	9,734	300	6,921	498	150
개정 후	17,771	9,872	300	6,951	498	150
증 감	168	+138	-	+30	-	-
사 유		-민생사법경찰단 (+10) - 서울식물원 (+22) - 연이병원등 (+28) - 복지정책과 (+12명) - 이동복지센터 (+9명) - 공공시설 (+38명) - 현안시책인력 (+19명)		- 소방인력 부족분 보강 (+30)		

#### 나. 소방공무원 증원(안 제2조 및 별표 3)

○ 행정안전부<sup>1)</sup>는 지난 6월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을 통해서 주민서비스의 질적개선과 직결되는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공무원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음<sup>2)</sup>.

○ 이 지침에 따라 서울시(이하 “시”)는 우선 현재 화재진압대원이 겸직 중인 오토바이 구급대 인력 3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내

1) 공문시행당시 행정자치부

2) 전국적으로 소방 1,500명, 사회복지 1,500명, 생활안전 등 1,515명 등 총 4,515명의 증원지침을 송부함.

24개 소방서 가운데 심정지, 무의식, 중증외상 등의 중증질환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구로와 광진소방서를 비롯한 10개 소방서에 오토바이 구급대 전담인력을 3명씩 우선적으로 증원할 예정임.

〈최근 3년('14~'16) 소방서별 중증질환 환자 발생 현황〉

순위	소방서	중증환자 출동건수	순위	소방서	중증환자 출동건수	순위	소방서	중증환자 출동건수
1	구로	10,810	9	관악	7,308	17	은평	5,642
2	광진	8,991	10	종로	7,125	18	성북	5,584
3	강남	8,333	11	강서	6,963	19	서대문	5,278
4	송파	7,996	12	동대문	6,691	20	용산	4,871
5	마포	7,918	13	중랑	6,530	21	중부	4,797
6	노원	7,633	14	양천	6,302	22	도봉	4,767
7	서초	7,434	15	강동	5,951	23	동작	4,032
8	영등포	7,397	16	강북	5,925	24	성동	'17.7 신설

-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구급 서비스 수요의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춘 소방공무원의 증원 확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응급상황에 대한 시급한 대응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구급대 전담인력의 확대가 기존의 응급구조 시스템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로 인해 기대되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시는 그 동안 소방공무원 3교대와 구급요원의 지속적인 확충, 소방서 신설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700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꾸준히 증원해 시 전체 공무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도 구급대 및 응급구조사 인력 보강과 신설 소방서 인력 충원을 위해 3년간 152명의 소방공무원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임.

〈소방공무원 증장기 증원계획<sup>3)</sup>〉

연번	업무명	내용	기간	증원내용(명)				
				계	'18	'19	'20	'21
				152	28	28	96	
1	금천소방서 신설	소방서 신설에 따른 신규 인력 보강	2016~	68			68	
2	서곡119 안전센터 신설	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신 규인력 보강	2017~	28	28			
3	마곡119 안전센터 신설	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신 규인력 보강	2018~	28		28		
4	강일 119 안전센터 신설	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신 규인력 보강	2019~	28			28	

- 시에는 이미 24개 소방서와 116개 안전센터, 24개 구조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인력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관할구역에 대한 다틈없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최단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갖추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3)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

## 다. 주요사업 성과창출과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증원(안 제2조 및 별표 3)

- 시는 소방공무원 증원외에 변화하는 복지환경 및 새정부 국정과제에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인력 확충과 보강을 위해 일반직 122명과 연구직 16명의 증원을 계획하였음.
- 증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직급별로 세분화하면 4급 4명<sup>4)</sup>, 5급 6명, 6급이하 112명과 연구관 3명, 연구사 13명임.
- 분야별로는 민생사법경찰을 포함해 민생·안전 분야 32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복지분야 49명, 서울기록원 건립을 포함해 공공시설 운영 38명, 전국체전 준비와 봉제산업 육성 등 현안시책 분야 19명 등임.

### 1) 민생·안전 분야

- 우선,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청소년 학대와 환경분야 등 매년 범죄자 입건 건수가 증가해 수사역량 집중이 요구되는 민생사법경찰단 10명을 증원하고자 함.

4) 신설되는 4급 직위(사회서비스공단추진반,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서울기록원, 전국체전기획과)

### 〈민생사법경찰단 최근 3년 수사 성과〉

연 도	입 건 실 적
'17년 3월말	271건 347명
2016년	1,190건 1,348명(3명 구속)
2015년	1,124건 1,292명(3명 구속)
2014년	993건 1,103명(2명 구속)

-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불법 다단계, 대부업, 무등록 자동차 불법정비,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분야에서 연간 1천여건 이상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수사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치구 파견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직무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sup>5)</sup>.
-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파견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한 수사 전문성 약화를 막고 향후 불법하도급, 보조금 불법사용 등으로 직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자체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 조성되고 있는 2018년 서울 식물원 개장에 필요한 인력(37명) 가운데 지난 해 임시개장을 위해 새롭게 증원된 인력을 제외한 22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임.

5)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인원 113명 가운데 시 자체인력은 62명이고, 자치구 파견인력은 51명임. 특히, 자치구 파견인력 51명 가운데 34명이 올해 연말 자치구 복귀와 교체가 예정되어 있음.

## 2) 복지 분야

- 복지분야 인력 증원계획의 핵심은 서북병원과 어린이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확대 운영과 24시간 운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은평병원 폐쇄병동의 안정적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 간호인력 보강 계획이며, 이들 병원에 모두 28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할 계획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 모든 간호·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시는 2018년 서북병원(35병상)과 어린이병원(140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는 이들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일반 병실과 비교해 3배 이상의 간호인력 확충과 시설개조 등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문제와 간호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최근 정부는 국가 책임 보육 요양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법 제정을 결정함.



-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의 직영 등을 위해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를 직접고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보육과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정부가 직접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임.
- 이런 계획에 따라 시는 다양하고 방대한 사회서비스시설 영역을 통합한 원활한 공단설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반’을 신설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인력 12명을 증원하고자 함.
- 정부의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 또한, 보육·요양·장애인활동보조를 포함해 사회서비스공단의 예상 업무가 다양하고 현재 운영중인 각 시설의 현황과 종사자 처우 등이 상이하고, 이들 종사자들의 의견도 다양해 공단설립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의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던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비롯한 인력효율화 방안을 통해 부서신설에 따른 인력소요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국가의 계획에 따른 인력증원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회서비스공단 출범과정에서 인력과 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 요청에 나설 필요가 있음.

- 이 밖에도 시는 아동 임시보호시설인 아동복지센터의 보육인력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정을 시급히 개선하고자 부족한 인력 가운데 일부를 우선 증원해 아동복지센터 운영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아동복지센터 운영개요〉

- ▶ 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아동일시보호시설
- ▶ 사업내용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양육대책 마련시까지(양육시설 입소 등) 생활지도 및 급식·목욕·건강 관리 등 보육업무 수행
  - ※ '16년 1일 평균 보호 아동 19.7명 / 3교대 근무
- ▶ 위치 : 아동복지센터(강남구 광평로34길 124) 내 2층 생활관

### 3) 공공시설 분야

- 2007년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는 은평구 혁신파크내에 연면적 15,004㎡ 규모의 서울기록원을 설립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준공예정임.

### 〈서울기록원 건축개요〉

- 위치 :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내)
- 규모 : 연면적 15,004㎡ (지상5층, 지하2층)
  - 전문서고, 전시실, 열람실, 아카이브자료실, 세미나실 등
- 공사기간 : '16.4월 ~ '18.7월(27개월)
- 총투자비 : 498억원 (시설비 425, 감리부대비 31, 장비비42)

- 시는 2018년 1월 서울기록원 건립·운영을 위한 4급 사업소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개과 26명의 인력을 배치·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현재 건립중인 서울공예박물관과 시민생활사박물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서서울미술관 건립 지원 등에 필요한 학예연구 인력과 신규로 건립중인 돈의문 전시관과 공평유구전시관 전시설계에 필요한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함.
- 최근 시는 서울전역에 각종 박물관을 포함해 25개의 문화시설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박물관 등의 건립지원과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자칫 과도한 인력 채용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각 문화시설별로 필요한 인력의 소요를 미리 충분히 예상하고 효율성과 시의 장기적 인력운용계획에 적합하도록 이들의 배치와 활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임.

#### 4) 현안시책 분야

- 시는 2019년 10월 제100회 전국체전을 유치하였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위해 ‘전국체전기획과’를 신설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10명을 증원하고자 함.
- 시는 100회 개최라는 전국체전의 상징성과 1986년 개최 이후

33년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점을 고려해 이 대회를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닌 해외동포와 평양시까지 초청하는 한민족 대축제로 개최하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외동포와 북한참가 업무를 비롯한 대내외 협력업무와 노후경기장 개·보수와 교통, 숙박 등 체전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에 따른 인력소요에 공감함.
- 대회 개최 1년 6개월 이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대한체육회의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따라 조직위원회 신설을 포함해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의 증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조직이 2019년 전국체전 개최 이후에는 사라지는 한시적인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인력증원 보다는 기존 대외협력·체육시설·교통·숙박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이 밖에도 시는 이번 인력 증원을 통해 봉제산업 육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기능 강화를 비롯한 시정주요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9명의 정원 순증을 요청하였음.

#### 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조정(안 별표 2)

- 안 별표의 2는 변화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성 및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관리자의 정원 책정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4급이상(3%이내 → 3.5%이내), 5급(13%이내 → 14%이내), 8·9급(16%이상 → 14.5%이상)
- 2008년 11월 과거 행정안전부령<sup>6)</sup>으로 정하고 있던 각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2013년 기능직의 일반직 통합 등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개편에 따른 비율조정이 있었음.

〈일반직 정원 책정기준의 변화〉

기 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경력관	비고
'07. 1. 2 ~	4% 이내	14% 이내	33% 이내	34% 이내	15% 이내	-	행안부령
'08.11.13 ~	5% 이내	16% 이내	36% 이내	36% 이내	8% 이내	-	조례
'13.12.12 ~	3% 이내	13% 이내	33% 이내	34% 이내	16% 이내	1% 이내	

- 이 기준에 따라 현재 직급별 정원 비율은 4급 이상이 2.95%, 5급이 12.94% 등으로 유지되고 있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현재(2017.8기준) 일반직 직급별 정원 및 비율〉

구 분	전 체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 경력관
정원기준	-	3% 이내	13% 이내	33% 이내	34% 이내	16% 이상	1% 이내
정원(명)	9,787	289	1,266	3,112	3,085	1,938	97
현재비율(%)	100	2.95	12.94	31.80	31.52	19.80	0.99
현원(명)	9,657	278	1,167	3,217	3,852	1,065	78
비율	100	2.88	12.08	33.31	39.89	11.03	0.81

-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시 조직도 이에 따라 세분화·전문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간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5급 정원도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11.4%에서 12.7%로 상승했음.
- 시는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고 업무분야별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신설 수요를 체감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상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4급은 4명, 5급은 6명 정도 밖에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직급신설 한계에 봉착한 직급별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현재 시의 직급별 현원 현황은 오히려 6급과 7급 현원이 정원의 범위를 크게 초과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5급이상 중간관리자 보다는 해당 직급 정원의 확대를 통해 법규내로 관리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시 조직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중간관리자의 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고, 향후 정부의 공무원 채용확대 기조에 따라 유사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행정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능 강화와 직급 조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원기준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시 전체 조직의 확대와 관리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조직 효율성 약화, 하위직 공무원의 상대적 소외감,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 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참고로, 경기와 부산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준은 시와 비교해 4,5급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며 이를 기준으로 노동조합 등에서도 중간관리자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는 상황임.

〈타 광역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정원기준 비교〉

구 분	일반직 합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 경력관
서울	9,787	3% 이내	13% 이내	33% 이내	34% 이내	16% 이상	1% 이내
경기	3,362	7% 이내	21% 이내	36.5% 이내	34% 이내	1% 이상	0.5% 이내
부산	3,936	4% 이내	14% 이내	37% 이내	37% 이내	7.5% 이내	0.5% 이내

#### 마. 인건비의 증감

- 시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1조 6,025억원을 2017년도 기준인건비로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당초 1조 5,887억원을 시의 인건비 총액으로 편성하였음.

- 본 개정안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168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약 111억원의 추가적인 인건비가 소요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98억원을 함께 고려할 때, 시의 2017년도 인건비 여유금액은 약 40억원임<sup>7)</sup>.

〈정원조정에 따른 비용추계〉

(단위 : 천원)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비 고
+11,130,901	○ 일반직(+122) : +8,201,681	'17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 소방공무원(+30) : +1,657,470	
	○ 연구직(+4) : +328,554	

- 공무원 정원의 증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고려할 때 40억원 규모의 기준인건비 여유는 조직운영의 유연성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됨.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을 통해 신속한 인력 확충을 위해 기준인건비의 범위와 무관하게 즉시 정원을 증원하고 충원하도록 안내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연도

7) 이번 하반기 정원 조정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반영될 예정임.



기준인건비 산정시에 반영하고, 다다음연도 기준인건비 산정시에 별도의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바 있음.

- 기준인건비 기준 충족과 별도로 인건비 증가는 장기적인 시의 재정부담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현재보다 면밀히 따져 진행해야 함.
- 한편, 시는 지난 해 11월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에서 공무원 정원을 2015년 17,476명에서 2017년 17,715명, 2018년 17,769명으로 순차적으로 증원해 2021년에는 17,890명으로 정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원	17,476	17,715	17,769	17,812	17,896	17,890
증감	-	+239	+54	+43	+84	△6

- 매년 개별사업에 따른 인력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중기계획의 초기에 이미 이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운용 방향성 설정이라는 인력운용계획 수립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603”을 “17,771”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9,734”를 “9,872”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6,921”을 “6,951”로 한다.

별표 2 일반직공무원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3.5%이내	14%이내	33%이내	34%이내	14.5%이상	1%이내
----	--------	-------	-------	-------	---------	------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7,603”을 “17,771”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9,787”을 “9,909”로 한다.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31	139	16	7	65	4
----	-----	-----	----	---	----	---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401”을 “9,519”로 한다.

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42”를 “358”로 한다.

같은 표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57	3		32	22	
-----	----	---	--	----	----	--

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288”을 “301”로 한다.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 중 “6,921”을 “6,951”로 한다.

같은 표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6,886”을 “6,916”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b>17,603</b>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b>9,734</b>명</p> <p>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b>6,921</b>명</p> <p>3.~5. (생략)</p>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구분</th> <th>4급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9급</th> <th>전문경력관</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3% 이내</td> <td>13% 이내</td> <td>33% 이내</td> <td>34% 이내</td> <td>16% 이상</td> <td>1% 이내</td> </tr> </tbody> </table> <p>2.~4. (생략)</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처</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7,60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9,78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 이내	13% 이내	33% 이내	34% 이내	16% 이상	1% 이내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7,603						정무직계	2						일반직계	9,787						1급	7	6	1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b>17,771</b> -----</p> <p>-----</p> <p>1. -----</p> <p>-----</p> <p><b>9,872</b> --</p> <p>2. -----</p> <p>----- <b>6,951</b> --</p> <p>3.~5. (현행과 같음)</p>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구분</th> <th>4급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9급</th> <th>전문경력관</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3.5% 이내</td> <td>14% 이내</td> <td>33% 이내</td> <td>34% 이내</td> <td>14.5% 이상</td> <td>1% 이내</td> </tr> </tbody> </table> <p>2.~4.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처</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7,77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9,90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 이내	14% 이내	33% 이내	34% 이내	14.5% 이상	1% 이내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7,771						정무직계	2						일반직계	9,909						1급	7	6	1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 이내	13% 이내	33% 이내	34% 이내	16% 이상	1% 이내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7,603																																																																																																		
정무직계	2																																																																																																		
일반직계	9,787																																																																																																		
1급	7	6	1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 이내	14% 이내	33% 이내	34% 이내	14.5% 이상	1% 이내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7,771																																																																																																		
정무직계	2																																																																																																		
일반직계	9,909																																																																																																		
1급	7	6	1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3급	23	18		1	3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급	17	7		1	9			
3·4급	5	5					3·4급	5	5						
4급	227	136	16	7	64	4	4급	231	139	16	7	65	4		
4·5급	10	10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401							5급이하 소계	9,519						
전문경력관 소계	97							전문경력관 소계	97						
별정직 계	29							별정직 계	29						
연구직 계	342							연구직 계	358						
연구관	54	2		32	20		연구관	57	3		32	22			
연구사	288							연구사	301						
지도직 계	24							지도직 계	24						
소방공무원 계	6,921							소방공무원 계	6,951						
소방준감	5	4		1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6,886							소방령 이하 계	6,916						
교육공무원 계	498							교육공무원 계	498						

